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675호 2012. 2. 6.(월)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89호(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1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490호(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3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14호(공원명칭 변경 결정고시) 40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16호(도로명주소 고시) 4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17호(도로명주소 고시) 43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11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121호(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수정공고) 50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이유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 다양한 고령화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노인복지 증진 및 여성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안건의 상정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제4조) ○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의결 사항의 처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2. 6.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89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행)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

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의출석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회의진행 등) 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 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③ 공인은 고령화 정책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

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인

3.6cm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위원장의인	3.6cm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연 락 처 : 자 택)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F A X)

위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을 동의합니다.

성명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
○ ○ ○

귀하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심의(자문·보고) 안건	
의 안 번 호	제 호
심 의 일 자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제 출 자	연수구청장
제출년월일	0000. 00. 00.

심 의 (자 문 · 보 고) 안 건 명

1. 제안이유

○ 내용 서술

2. 주요내용

○ 내용 서술

3. 추진경위

○ 0000. 00. 00 :

○ 0000. 00. 00 :

4. 심의자료

○ 관련법령, 계획서 등 첨부 또는 설명

5. 참고사항, 민원사항 등

○ 내용 서술

6. 의견청취

○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

- 주민의견

- 관계기관(부서) 의견

- 제시의견 및 검토내용(반영여부 포함) : 가능한 표로 작성

7. 의결조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안건(○○○○)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심의 안건(○○○○) 결정조서

[illegible]

※ 안전 심의에 필요한 보조자료 빠짐없이 수록 요(아래한글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 참석 등록부

0000. 00. 00 (○요일)

연번	성명	확인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부

년 월 일	기관명 및 분류기호	수 신	발 신	제 목	부 수	취 급 자	서 명	비 고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	☐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 규칙의 관련 상위법령 인용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개정(제2조) -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20:00 ~ 02:00”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로 변경 - 가정사업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표시 ○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관련 사항 개정(제11조) - 동일인의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을 “월 30건, 같은 날 같은 장소 10건 이내”에서 “월 10건, 같은 날 같은 장소 2건”으로 변경 ○ 용어의 변경 -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 -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변경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2. 6.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49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일이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 가정사업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수거·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가. 폐장판·페스티로폼·고무·피혁·합성수지·폐목재류·미용머리카락·인형·신발·장난감·가방·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이불·의류·섬유·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가연성 폐기물]
 - 나. 유리·형광등·도자기 조각 등과 소각재, 광재, 분진, 오니 등[불연성 폐기물]
 - 다. 공사·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불연성 건설폐기물]
3. 재활용가능자원 :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동일하다.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전화번호 기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서에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 용도, 색상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⑤ 구청장은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봉투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 ①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 판매소에 공급하며, 공급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신청한 후, 공급대금 고지서나 가상계좌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시중은행(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용봉투를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골목길 청소 또는 우리 동네 대청소 등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동장 및 사회단체장 등의 공공용봉투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별표 8의 판매소 지정 기준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판매소 지정신청 및 변경신고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판매소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증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판매자가 폐업,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를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분증,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증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3.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판매소는 소비자가 파손되지 않고 오물이 묻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5.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 6. 판매소는 기타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관한 협조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것 외의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입하여 판매 할 수 없다.

제8조(판매소 지정 취소) 구청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례에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매점매석 행위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관련대장의 관리) 구청장은 스티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관련 대장을 각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동장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련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 봉투 수수료감면) 동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종량제 봉투를 배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⑤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⑥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및 재질(제3조 관련)

1.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종 류
	일반형 봉투	끈 삽입형 봉투	
2	19×35.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3	22×39.5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5	26×46.5	26×39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10	33×56.5	33×49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10	36×53.5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20	42×69.5	42×62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20	45×65.3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50	56×91.5	56×85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60	60×97.5	60×90	가정사업계용 봉투
100	71×113.5	71×107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125	80×121.5	80×112	가정사업계용 봉투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형봉투 여분의 길이 계산식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 봉투의 길이 : $[\{\text{반지름}(r) \times \text{반지름}(r) \times \pi\} : \text{봉투용량}] + \text{지름}(d)$

2. 규격봉투의 색상 및 재질

구 분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
색 상	청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백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녹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황 색
재 질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별표 2]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18.4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 봉투(20ℓ)

— — — 일 반 용 — — —

1. 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넣어 지정된 날 저녁에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

일	화	수	목	금	토	일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및 연탄재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배출금지	일반 폐기물

2. 이 종량제 봉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일반폐기물을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활용품은 화요일 저녁에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에 넣어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42cm

51.1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0ℓ 봉투의 표준 사양임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3ℓ 봉투의 표준 사양임

[별표 4]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모 형 도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로 이용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쓰레기 봉투는 저녁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 쓰레기 종류별 배출 일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반 폐기물	재활용품 및 연탄재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	배출 금지	일반 폐기물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품질인증 표시 및 제작사양

[별표 5]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25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30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72.5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 ℓ) — — 가정사업계용 — — 1. 처리 대상 폐기물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류,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2.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처리업체 : ☐ 문 의 처 : 품질인증표시	91.5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125 ℓ) — — 가정사업계용 — — 1. 처리 대상 폐기물 -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류,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2.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처리업체 : ☐ 문 의 처 : 품질인증표시
	60cm		80cm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문안

100 mm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출자용)	
 110304993120000001	금 액 (원권) <구입일: 년 월 일>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용)	
금 액 (원권) <구입일: 년 월 일>	
■ 동별 수거요일 전날 저녁시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건물 문 앞에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품목별 수수료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배출 시 위탁업체 수거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동별 수거요일 및 수거담당자 전화번호는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거위탁업체: (주)송도환경 ☎820-7322 ■ 환불 및 교환(가급적 30일 이내)은 미사용 스티커로 훼손이 없어야 가능하며 구입처로 연락 바랍니다.	
 110304993120000001	기타불편사항은 청소행정과 ☎810-7327로 문의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거업체용)	
 110304993120000001	금 액 (원권)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 바탕색상
- 일천원권 : 주황색 , 삼천원권 : 청색
 - 오천원권 : 보라색 , 일만원권 : 초록색

[별표 7]

공공용봉투의 제작사양 (제3조 관련)

22.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공공용봉투(50 ℓ) — — — 공 공 용 — — — 1. 이 봉투는 공공용봉투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 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 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합니 다. 3.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이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 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품질인증 표시
68.7cm	

56cm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상기 사양은 50 ℓ 봉투의 표준 사양임

[별표 8] 판매소 지정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일반판매소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한하지 아니하는 업소
구내판매소	1. 구내판매소는 3층 이상 고층건물,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별표 9]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액	신고포상금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30,0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30,00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50,0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000	100,000

(별지 제1호 서식)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슈퍼마켓() 아파트관리사무소() 기 타()			
※ 해당란에 ○표하고 기타는 영업형태를 상세히 기재				
점포규모	평		봉투적재창고	평
[점포약도]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종량제 봉투·스티커)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종량제 봉투 · 스티커)판매소지정증

①지 정 번 호 :

②상 호 (명칭)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성명(대표자) :

⑤생년월일 :

⑥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 · 스티커)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뒷 면)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확 인 (인)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스티커) 진열장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스티커) 공급을 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공급하려할 경우(불법 제작·유통 사례 예방)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소 지정증 발급대장

지정번호	발 급 일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신 고 자	주민등록 번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판매소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변경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판매소(상호·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_____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 지정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폐업(휴업)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판매소(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원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6호 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대장

① 구입일자	② 성명	③ 배출장소	④연락처 (핸드폰)	⑤ 배출품목	⑥스티커 구입금액	⑦비고 (배출 일자, 세부적인 버릴 장소 등)
년 월 일			• 집전화: • 핸드폰:		• 일천원권: 매 · 삼천원권: 매 • 오천원권: 매 · 일만원권: 매 ※총 액 : 원	
년 월 일			• 집전화: • 핸드폰:		• 일천원권: 매 · 삼천원권: 매 • 오천원권: 매 · 일만원권: 매 ※총 액 : 원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대장 기입은 본인이 직접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커 중 ‘수거업체용’은 판매소에서 구매대장과 보관하고, 주민에게는 ‘배출자용’과 ‘부착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과 구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부족 금액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① 구입일자 : 스티커를 구입한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 ② 성명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배출장소 : 폐기물을 내놓는 장소의 주소지를 기재하십시오.
- ④ 연락처 : 집 전화 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배출품목 : “품목별 가격표”에 의거, 배출하실 품목을 상세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스티커 구입금액 : 구매한 스티커 매수 및 총액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비고 : 특별히 수거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줄 사항(예 : 배출할 날짜, 이사하는 경우 이사 가는 날짜, 주소지가 어려운 장소인 경우 세부적인 배출장소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일 자	수 령 내 역			수령인	공 급 내 역			적 요 (공급대상, 구체적 사용용도 등)	잔 량			결 재		
	계	50 ℓ	100 ℓ		계	50 ℓ	100 ℓ		계	50 ℓ	100 ℓ	담당자	주 무	동 장

[illegible]

[별지 제9호 서식]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자			신고내역		과태료		포상금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고방법	신고내용	부과일	수납일	계좌번호	포상금	

공원명칭 변경 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명칭 : 터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공원 명칭)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2012. 2. 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공원 명칭 변경 조서

공원종류	위치	공원명		변경명칭의미 및 사유
		당초	변경	
어린이	청학동 551-5	터널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청학동의 주민참여공간으로서 공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공원으로 결정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12-16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2. 0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64번길 15-16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2.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47-3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64번길 15-16	미부여	2009-07-09	한나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499	미부여	2009-07-06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1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동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2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동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3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4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5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동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6	건물번호 분할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동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 2012-17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2. 0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02. 0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20-7, 420-22, 420-23, 420-24, 420-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420-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55번길 28	건물번호분할로 인한 지번변경	2009-07-09	청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월 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구민위원이 됨으로써 지역위원회와 구민위원회간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 지역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대한 재원 및 실무지원 조항을 삽입하여 지역위원회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함 (제7조)
- 지역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대한 재정 및 실무지원 조항 삽입(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2. 21(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기획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807, FAX 810-706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개 정(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구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예산학교,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및 구성) ①~③ (생략) ④ <u>구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 할 수 있다.</u> 1. ~ 3. (생략) ⑤~⑥ (생략)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을 체결한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구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제3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신설>	제6장 보칙
제3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u>구청장은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제3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u>구청장은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예산학교, 민관협의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를 지원하고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구청장은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민관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수정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비영리법인·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 규모	보육정원	개원일자
초록어린이집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29번지	대지: 232.1m ² 건물: 330.32m ² (지하1층, 지상2층)	49명	2007.1.10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3.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위탁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공고개시일 현재까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단, 고용시설장은 제외함)
- 법인, 단체, 개인의 명의대여 등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범위 : 구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 종사자 보수 :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여야 함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추진계획,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연수구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2. 2. 3 ~ 2012. 2. 22 (20일간)**
- **접수기간 : 2012. 2. 13 ~ 2012. 2. 22 (10일간)**
- 접수장소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 공휴일 및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② 위탁운영사업계획서 1부(별지 2호 서식)

③ 위탁운영체 현황 1부(별지 3호 서식)

④ 별도 제출자료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대표자(개인, 법인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

·시설장 : 이력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원본지참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위탁신청 및 출연금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 의결 관련서류 첨부

- 단체의 경우 단체 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부동산 등 재산관련 증빙서류 및 부채 증빙서류 포함)

- 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계획서(1년간) 1부.

- 2009년, 2010년, 2011년도 법인(단체) 총괄 예산 결산서

- 보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

- 2010년, 2011년도 법인(단체) 사업실적

- 수탁자의 상훈(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이상) 관련 서류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참조

※신청서류는 상기 제출서류에 게시한 『위탁운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①②③』 번호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5부 제출)

8.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 : 201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국공립보육시설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적용

평가항목	계	운영체 공신력	시설운영 실적	대표및 시설장 전문성	시설운영 계획	재정능력
배점	100	10	10	35	40	5

- 선정방법 : 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시설
장
내정자) 심의 후 결정하며,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신청운영체
가 전부 부적격시에는 재공고하여 모집
- ※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이내) 순으로 실시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통지

9. 유의사항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심의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처리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10.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 032-749-69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